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177

발의연월일: 2024. 9. 23.

발 의 자: 권성동·강대식·조은희

박상웅 · 김성원 · 김용태

최은석 · 김승수 · 엄태영

유용원 · 이철규 의원

(11인)

제안이유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 50%는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상속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적용받을 경우 최대 60%의 세율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는 OECD 등 주요 국가들과 비교할 때 가장 높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음.

OECD의 많은 국가들이 상속세를 폐지하고 있으며 상속 주식에 일 괄적으로 할증과세를 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바, 향후에는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승계를 원활하게 하여 법인세와 소득세를 더 걷는 쪽으로 가야 함.

한편, 상속세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OECD 회원국은 가업승계에 대해서는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세율인하 및 공제확대를 통해 세금을 대폭 감면하는 등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공제요건이나 사후 관리 요건이 까다로워 활용도가 낮고, 이로 인해 가업상속을 포기하고 외국으로 자본이 이탈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현행 상속세율을 인하하고, 상속공제 중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 괄공제 금액을 확대하며, 가업상속에 대한 공제요건을 완화하고 최대 주주 등의 상속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하는 등 가업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경제활성화에 기 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가업상속공제의 요건 중 피상속인 경영기간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단축함(안 제18조의2제1항).
- 나.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액을 5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함(안 제19조제4항).
- 다. 상속세 일괄공제금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함(안 제21조제 1항).
- 라. 상속세 과세표준의 구간별 세율을 인하함(안 제26조).
- 마.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등의 주식등에 대한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함(제63조제3항 삭제).

법률 제 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10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0년"을 "5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 의 부분 중 "10년"을 "5년"으로 한다.

제19조제4항 중 "5억원"을 각각 "12억원"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5억원"을 각각 "10억원"으로 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5억원"을 "10억원"으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상속세 세율) 상속세는 제25조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속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 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5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5백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천5백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억4천5백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30억원 초과	7억4천5백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제28조제1항 단서 중 "5억원"을 "10억원"으로 한다. 제63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① 거주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①
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	
는 경우로서 가업[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	
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	
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	
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	
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	
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u>10년</u>	<u>5년</u>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	
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	
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	
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이 <u>10년</u> 이상 20년	1 <u>5년</u>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 2. · 3. (생략)
- ② ~ ⑦ (생 략)
- ⑧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가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조세포 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조세 범 처벌법」 제3조제1항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하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의 기 간 중의 행위로 한정한다. 이하 제18조의3에서 같다)로 징역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 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른다.
- 1. · 2. (생략)
- ⑨ · ⑩ (생 략)
-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 ~
 - ③ (생 략)
 -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u>5억원</u> 미만이 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

2.・3.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8
<u>5년</u>

· 1.·2. (현행과 같음)
9 · ⑩ (현행과 같음)
에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4
<u>12억원</u>
12억원

을 공제한다.

제21조(일괄공제) ① 거주자의 사 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제67조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신고가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② (생 략)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제18 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 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 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제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 3. (생략)

제26조(상속세 세율) 상속세는 제 25조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 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제21조(일괄공제) ①
<u>10억원</u>
<u>10억원</u>
,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u>10억원</u>
1. ~ 3. (현행과 같음)
제26조(상속세 세율) 상속세는 제
25조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
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 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억원 초과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5억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10억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30)
10억원 초과	2억4천만원 + (10억원을
30억원 이하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30억원 초과	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제28조(증여세액 공제) ① 제13조 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 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 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 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 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 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 기본법」 제26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 니하는 경우와 상속세 과세가 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 저 ② (생략)

계산한 금액(이하 "상속세산출 계산한 금액(이하 "상속세산출 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 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5
1억원 초과	5백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5억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10)
5억원 초과	4천5백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10억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20)
10억원 초과	1억4천5백만원 + (10억원을
30억원 이하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30억원 초과	7억4천5백만원 + (30억원을
30덕전 소파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세28조(증여세액 공제) ①
- <u>10억원</u>
② (현행과 같음)
에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 | <삭 제> 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 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 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 의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중소기업,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중견기업 및 평가기준일 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 식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 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 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 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 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 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